

『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」에 근거한 「2019년 농기계임대 사업 시행지침」의 “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(안)”을 반영하여 장기임대료를 현실화하고자 함.
-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을 조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임대농업기계의 입고시간 조정(안 제8조)

- 현행의 사용 당일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조정한다.

나.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조정 (안 제18조)

- 종전의 임대료 및 배달료의 부과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

다.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(안 제19조)

- 성별을 고려한 위촉 규정 및 여성농업인·단체 일정 비율 이상 위촉을 의무화

라. 농업기계의 장기임대시 임대료 규정 (별표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및 같은법 시행규칙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 - 임대농업기계의 입고시간을 현행 오후5시에서 오후6시로 조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임대료 및 배달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, 농업기계 장기임대 시 임대료를 인하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
 - 농업기계 사용 후 반납시간을 오후 6시로 연장함으로써 추가 인건비로 인한 1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, 농번기 농업기계 사용시간이 짧음으로 인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장기임대료를 인하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